

4) 기 타

가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5-1376호

- 예고기간: 2025. 8. 20.~2025. 9. 9.(20일간)

- 예고결과: 의견없음

나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다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라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마) 비용추계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○ 개정 목적

본 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예방접종 기회를 확대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

○ 주요 검토 내용

- (안 제2조) 지원 대상을 ‘65세’ 이상을 ‘50세’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사회보장제도(변경)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- (별표) 완화 대상인 64세~50세 군민 중 55세~50세는 2026년부터 연차별 완화하여 2031년에는 50세(1981. 12. 31. 이전 출생자)까지 확대 적용되는 연령별 접종 개시 연도를 담은 별표를 신설하여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였음.
- (별지 제1호 서식) 지원 대상 연령, 지원신청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동의를 보완하였음.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질병관리청(고시 및 지침) 「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」에 따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 연령이 만 60세 이상 성인에서 만 50세 이상 성인으로 변경(2023. 5. 15. 시행)하고 있어,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며, 본 개정안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 조례 개정애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- 다만, 지원 대상 확대로 2026년(1차 년도)은 접종 예상 군민을 4,600명(55세 이상 인구의 55% 추산)으로 계획하고 190,000천 원 비용을 계상하고 있어 예산확보, 사업 홍보, 대상자 접종까지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촘촘한 계획수립에 수혜자 시각의 배려가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11. 26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